

제130호(2016. 7. 12.)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김현중 국승용



1. 성장하고 있는 수의(獸醫) 산업	1
2. 왜 수의간호복지사가 필요한가?	3
3. 해외 사례	6
4.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7
5.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방안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정민국 선임연구위원	061-820-2263	mkjeong@krei.re.kr
내용 문의	국승용 연구위원	061-820-2275	gouksy@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산업 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나 반려동물 산업 구조가 낙후되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에 대한 진료는 수의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물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이 양성되고 있지 않음. 수의사가 아닌 보조 인력이 엑스레이를 촬영한 것이 알려져 동물병원이 영업조치를 당한 사례도 있음.
 - 「수의사법 시행령」에서는 자기가 소유한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는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번식장 등에서 수의사가 아닌 자가 인공수정, 제왕절개 등의 동물 의료 행위를 하더라도 자가 진료에 대한 예외 규정 때문에 「수의사법」에 의해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014년 기준 동물병원 수는 3,640개, 종사자 수는 10,534명, 매출액은 7,855억 원임. 2007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사업체 수 3.1%, 종사자 수 8.4%, 매출액 17.9%임.
 - 같은 기간 동물병원당 매출액은 2.6배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45% 증가하는 등 동물 병원의 규모가 확대됨.
 - 반려동물 관련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 관련 매출액의 비중이 동물병원 매출액의 83%(2014년 기준)를 차지함.
 - 동물 건강검진, 스케일링 등 동물 관련 의료 서비스도 다각화되고 있어 동물병원 관련 산업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수의(獸醫) 산업 성장과 수의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수의간호복지사는 수의사의 지시를 받아 채혈 등 동물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수의사법」의 개정이 필요함. 제도 도입을 통해 다각화되는 동물 의료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동물 의료 보조와 관련된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수의간호복지사 국가 공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법령 정비도 필요함.
 - 수의간호복지사 도입과 더불어 수의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가 진료를 엄격히 제한해야 함. 자가 진료는 동물의 건강을 해할 수 있으며 동물 의약품의 오남용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산업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자가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수의 산업 성장에 따라 동물 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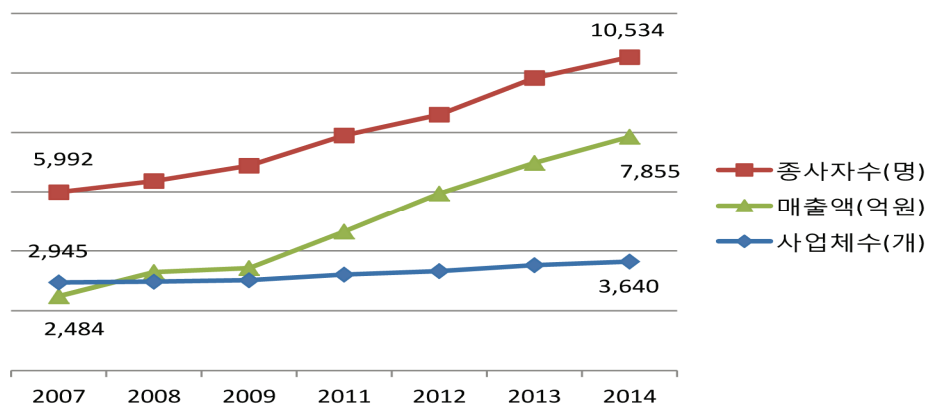
1. 성장하고 있는 수의(獸醫) 산업

-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그와 관련된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어 수의 산업 구조가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음.
 - 수의간호복지사 제도는 수의사가 전담하고 있는 동물 의료 행위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의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시키는 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음.
 - 「수의사법 시행령」에 허용된 자기가 사육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 즉 자가 진료에 대한 문제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자가 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수의 산업에서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과 자가 진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의 산업을 선진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수의 산업 종사자와 매출액 빠른 성장세

- 2014년 기준 수의업 사업체(이하 동물병원) 수는 3,640개, 종사자 수는 10,534명, 매출액은 7,855억 원임. 2007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사업체 수 3.1%, 종사자 수 8.4%, 매출액 17.9%임. 수의 산업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함.
 - 사업체 수에 비해 종사자 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개별 동물병원의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동물병원당 평균 종사자 수는 2007년 2.0명에서 2014년 2.9명으로 증가함.
 - 동물병원 평균 매출액도 2007년 8,400만 원에서 2014년 2억 1,600만 원으로 증가함.

그림 1. 수의 산업 추이



자료: 통계청,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동물병원 매출의 80% 이상이 반려동물에서 발생

- 2014년 기준 동물병원은 경기(860개, 23.6%), 서울(800개, 22%) 등 수도권에 46%가 분포하고 있으며, 특별시와 광역시에 설립된 동물병원의 비중은 44%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분포하는 동물병원은 주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추정되며, 대도시가 아니라도 중소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 개설된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비중이 높을 것임.

□ 반려동물 관련 매출 비중 높고, 시장 규모 확대 전망

-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전체 동물병원 매출에서 반려동물 관련 진료 비중이 83%임. 반려동물 관련 매출액 비중은 2011년 대비 7%p 증가함.

표 1. 동물병원 세분산업별 매출액 비중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반려동물 ¹⁾	76.4	80.9	83.0	83.4
산업동물	23.6	19.1	17.0	16.6

주 1) 통계청 조사항목은 애완동물.
자료: 통계청,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 2014년 기준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관련 총매출액은 6,551억 원, 산업동물 관련 총매출액은 1,087억 원임.
- 소득 향상,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함.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물 진료의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1995년 5,000억 원¹⁾에서 2012년 9,000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2012년 기준 관련산업 시장 규모에서 진료 부문이 3,12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34.7%) 차지함.²⁾
 -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2년 9,000억 원에서 연평균 26.3%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5조 8,10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³⁾ 2012년의 진료 부문 비중을 적용하면, 2020년 수의 서비스 시장 규모는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1) 농촌진흥청, 2011. "견우시대-반려견 산업 다시보기."

2)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2014. 12.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3) 이정임·이수진·동그라미, 2015. 6.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 이슈』, 경기연구원(재인용; 농협경제연구소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반려동물 시장 규모 확대 전망, 동물 의료서비스 다각화

□ 다양한 형태의 동물 의료 서비스 확산

- 산업동물에 대한 수의 서비스는 질병 예방과 치료, 상해 치료, 번식 등의 비중이 높으며 현행 동물병원 관련 제도나 관리체계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수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전통적인 수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수의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음. 동물 질병 진단을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CT) 장치나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첨단 장치를 도입하고 처치 시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첨단 의료기기도 도입되고 있음.
- 혈액 검사, 전해질 검사, 심전도 검사, 호르몬 검사, 내시경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일괄 진행하는 반려동물 종합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물병원이 존재함. 반려동물 스케일링, 보철, 치아교정 등의 의료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음.
- 해외 동물 의료 서비스 중에는 물리치료와 재활을 전담하는 동물병원이 있는 등 반려동물 산업이 발달한 국가의 수의 서비스는 전문화·다변화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수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됨. 동물병원 관련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수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2. 왜 수의간호복지사⁴⁾가 필요한가?

□ 동물 의료 서비스 다변화와 수의간호복지사

- 전통적인 동물 의료 서비스인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은 수의사 고유의 업무 영역으로 수의간호복지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수의 서비스가 다변화되면서 수의간호복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4) 외국에서는 동물병원이나 수의 임상과 관련된 기관에서 수의사 및 그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직책에 있는 직업군을 보조하기 위한 직업군으로 수의테크니션, 수의간호사, 동물간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한상근 외, 2013. 『주요국과의 직업비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간호사의 제도화를 위해 수의간호복지사 자격의 신설을 추진 중임.

채혈, 각종 검사 등 진료를 보조하는 수의간호복지사

- 수의사 혼자서 처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동물은 동물을 취급하는 데 비교적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비교적 용이함. 하지만 반려동물의 경우 반려동물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 치료에서는 수의간호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됨.
- 채혈, 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는 동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진료 행위로, 숙련된 수의간호복지사라면 수의사의 지시를 받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의사의 진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음.
- 스케일링과 같은 일부 진료 행위도 수의사의 지시를 받아 수의간호복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며, 수의 서비스가 다변화됨에 따라 수의간호복지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수의간호복지사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와 같은 통상적인 수준의 상담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어 동물병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음.
- 일반 의료 영역에서는 간호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사의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음. 이들은 의사의 원활한 진료를 지원하고 환자와의 소통, 통상적인 상담, 진료에 대한 만족도 제고 등에 기여하고 있음.

□ 동물의료 보조를 위한 전문 인력 필요

- 전국 10개의 수의과대학에서 연간 배출하는 수의사 수를 고려하면 향후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전국 수의과대학에서 매년 약 500명씩(입학 정원 기준) 수의사를 배출한다고 가정하면, 2014년 5,745명⁵⁾에서 2020년에는 8,745명으로 5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의사의 진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물 진료 업무의 다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함.
 - 일반 의료 영역에서는 간호사 등 진료 보조 인력이 담당하는 채혈, 엑스레이 촬영, 각종 검사, 접종 등의 모든 진료 업무를 수의사가 담당한다면 수의사의 업무 부담이 큼. 또한 동물 진료 영역이 스케일링, 반려동물 소유자와의 상담, 간호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여서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전문 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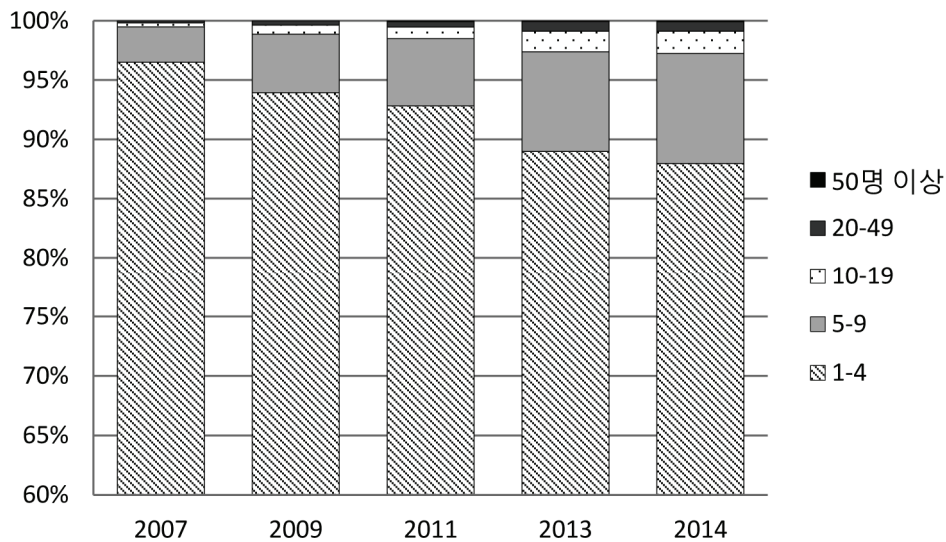
5) 동물병원 수의사(Journal of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Vol. 51_No.2).

동물 의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보조 인력 필요

□ 동물병원의 규모화에 따른 수의간호복지사 수요 확대 예상

- 수의사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임상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임. 수의사가 수의 서비스를 전담한다면 높은 수준의 진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동물 진료비를 책정하는 것이 불가피함.
- 2014년 기준 종업원 수 1~4명인 동물병원의 비중은 88%로, 대부분의 동물병원의 규모가 소규모여서 수의간호복지사가 필요하지 않은 규모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하지만 서울의 경우 동일한 규모의 동물병원 비중이 82%로 줄어드는 등 반려동물 진료 비중이 높은 대도시 동물병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또한 2007년 3%에 불과했던 종업원 수 5인 이상 동물병원의 비중이 2014년 12%로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병원의 규모화가 진행 중임.

그림 2. 동물병원 규모별 비중 추이



1. 자료: 통계청,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 수의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동물 진료 업무를 수의간호복지사에게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면 수의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음. 또한 동물 진료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동물 진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외국에서는 수의 간호 인력 양성을 법제화

3. 해외 사례⁶⁾

□ 미국

-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고, 자격증이 있는 수의테크놀로지스트(Veterinary Technologists: VT)나 수의테크니션이 보조하고 있음.
 - 수의테크놀로지스트: 4년제 학사학위가 요구
 - 수의테크니션: 수의과 대학 협회의 AVMA(Accredited Veterinary Technology Program)가 승인한 학교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하며 관련된 전공의 준학사 2년제 교육과정이 요구
- 수의테크놀로지스트는 동물의 질병과 부상 진단,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의료 테스트 시행, 수술 또는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수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동물의 혈액이나 소변 샘플 수집 후 실험실 분석, 세포조직에 대한 현미경 검사 준비
 - 엑스레이 같은 각종 기구와 기계의 운영 및 관리 책임, 경우에 따라 동물 의료에 필요한 연구실험 진행
 - 대부분은 동물병원에서, 일부는 동물보호기관, 동물원, 승마장,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소속된 기관에서 업무 수행

□ 영국

- 1966년 영국 수의사법(VSA schedule 3)을 통해 자격을 갖추고 등록한 동물간호인력을 동물간호사(Animal Nurse)라 칭함. 수의사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필요한 내외과 처치에 종사할 것을 명문화함.
 - 1965년 영국 동물 간호사 협회(BVNA)가 설립되었으며 1984년 명칭이 수의간호사(VN)로 개정됨.
 - 국가 자격인증은 1986년 수의 자격 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s)에서 처음 인증되었으며 1991년 수의사법(VSA Schedule 3)에 “수의간호사는 어떠한 치료 또는 위험이 따르지 않는 검사 또는 수술을 고용한 수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반려동물에게 행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였음.

6) 한상근 외(2013) 『주요국과의 직업비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의 내용을 요약함.

수의사 이외의 사람은 동물 진료 행위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개정해야

- 영국의 수의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동물간호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수의 간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수의사 감독하에 간단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단독적으로 백신 클리닉을 운영하거나 수의사를 대신하여 가정 방문 치료를 할 수 있게 규정함.

4.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 현행법상 수의간호복지사의 동물 진료보조 행위 불허

-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의 진료는 수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고,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진료 행위(자가 진료)를 할 수 있음.
 -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 행위의 금지)에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에 “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 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진료 행위”, “수 의학 전공자가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하는 진료 행위”,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 등을 예외로 두고 있음.
- 수의사 이외의 사람이 채혈, 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 접종 등 동물 진료와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수의사법」에 의해 처벌을 받음. 수의간호복지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의사의 감독하에 수의간호복지사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수의사법」 제39조(벌칙)에는 “무면허 진료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⁷⁾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수의사법」 제33조(감독)에는 “동물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료 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11개 지점을 둔 대형 동물병원 체인에서 간호사가 약을 짓고, 청진하고,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내용의 방송이 문제가 되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가 있음(중앙일보 2016년 3월 18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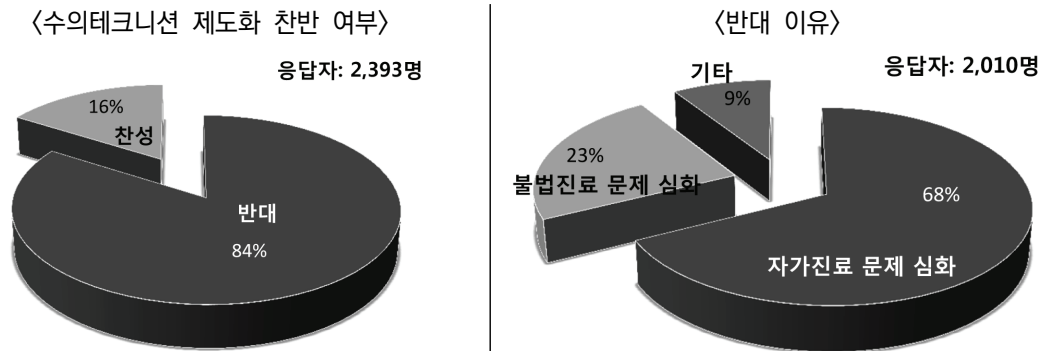
7) 병과(併科):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NAVER 국어사전).

동물 건강 악화를 야기하는 자가 진료 엄격히 제한해야

□ 자가 진료 허용에 따른 동물 학대 및 동물 건강 위해 우려

- 생명체로서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회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수 의사법령에 이처럼 변화된 사회 여건이 반영되어야 함.
- 자가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조문이 제정된 것은 1994년이며, 조문에는 ‘자가 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 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무상 진료 행위’는 수의사 이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비업 무 무상 진료와 같은 조항에 자가 진료를 언급한 것에 비추어 도입 당시 취지는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비업무적 자가 진료에 대해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려동물 판매업소, 번식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에 대한 의료 행위는 상업적인 업 무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이 해당 시설 업주의 소유이므로 이들 동물에 대한 진료를 자가 진료로 간주하고 있음. 이들 시설에서 이루 어지는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는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 물에 대한 것이라는 점, 상대적으로 대규모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통 상적인 자가 진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진료 업무를 보조할 수의간호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수의사임. 그러나 대다수의 수의사들이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자가 진료 문제, 불법 진료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수의테크니션 제도화에 대한 수의사의 의견



주: 수의간호복지사 명칭이 검토되기 전, 수의테크니션의 명칭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됨.
 자료: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데일리벳 2016년 3월 18일 자 기사) 내용을 재구성함.

체계적인 수의간호복지사 인력 양성 필요

- 대한수의사회가 전국 동물병원 임상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6.3.11~13일)에 의하면, 수의사들의 84%가 수의간호복지사 제도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였음. 반대 이유로 자가 진료 문제 심화라는 응답이 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불법 진료 문제 심화라는 응답이 23%를 차지함.
- 임상 수의사들은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항생제 내성 위험 확대, 동물 학대, 동물의 생명 위협 등과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자가 진료 또는 불법 진료의 부작용⁸⁾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의간호복지사 자격이 도입되면, 동물판매 업소 등에서 자가 진료 또는 불법 진료 문제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애완동물 번식 농장에서의 비전문가에 의한 수술, 불법적으로 구입한 마취제 사용 등 비상식적인 진료 행위 등이 보도되면서 자가 진료가 지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됨.
- 수의사들의 자가 진료, 불법 진료에 대한 우려는 동물 건강 증진과 동물 학대 방지,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항생제 내성 문제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주장임. 수의 산업의 선진화 측면에서 수의간호복지사 도입과 함께 무자격자의 자가 진료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요구됨.

□ 수의간호복지사 인력 양성 체계 미흡

- 수의간호복지사가 수의사의 동물 진료 행위를 보조하고, 일반 의료 서비스의 간호사가 행하는 채혈, 접종 등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 우리나라는 수의사 이외에는 동물의 진료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 간호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우리나라의 동물 간호 인력으로는 일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애완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생과 한국동물복지학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음. 이들 인력들은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동물 진료 행위 제한으로 일반 의료 분야의 간호사처럼 채혈, 접종, 검사 등의 실질적인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또한 동물병원 역시 수의복지간호사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동물 간호 인력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음.
 - 일부 대학의 동물간호학과, 수의간호전공, 애완동물관리과, 특수동물학과 등에서는 동물간호학, 동물기초간호, 반려동물 간호학, 동물해부학 및 실습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음.

8) 수의테크니션 제도화② 응답하라 1994(테일리벳 2016년 3월 29일 자 사설) 내용 참고.

수의간호복지사 업무 범위, 자격 등 법제화 필요

- 한국동물복지학회에서 운영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2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2014년 10월 기준 2,368명이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함.
- 일부 동물병원에서 인력 채용 시, 관련 학과 졸업자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경우는 있으나 관련 법제가 없기 때문에 이들 동물 간호 인력이 동물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움.
- 수의간호복지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동물 간호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 기준이 신설되어야 함.

5.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방안

□ 수의간호복지사 법제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

- 수의간호복지사 법제화를 위해서는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수의간호복지사의 동물 진료 보조 행위 허용, 자격과 면허에 대한 사항, 업무 범위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함.
- 「수의사법」에 수의간호복지사에 대해 정의(제2조)하고, 업무 범위를 정한 후(제3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동물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도록(제10조) 「수의사법」을 개정해야 함.
 - 현행 「수의사법」 제2조에는 수의사, 동물, 동물진료업, 동물병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수의사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10조에는 무면허 진료 행위 금지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국가 자격 제도로 수의간호복지사를 도입하려면, 「수의사법」에 수의간호복지사의 응시 자격, 면허에 관한 사항, 결격 사유, 국가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자격과 면허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사법」에도 수의사의 면허, 응시자격, 결격사유, 국가시험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가축 전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자가 진료 허용해야

□ 자가 진료의 제한

- 동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동물 학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등 자가 진료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법 시행령」에 허용된 자가 진료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자가 진료에 대한 부작용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산업동물의 경우 진료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제류에 대해서는 가축 방역상 구제역 예방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 진료의 허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임상수의사 중에서 산업동물만을 진료하는 수의사의 비중은 약 17%에 불과함. 소, 돼지 사육마릿수를 고려하더라도 산업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⁹⁾ 만일 이들 가축에 대해 자가 접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수의사가 부족하여 적시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표 2. 동물병원 및 수의사 현황(2014년 12월 기준)

구분	병원 수	수의사 수	반려동물 및 산업동물 마리
진료분야	반려	2,792	반려동물: 556만 마리 ²⁾ (2012년 기준) 소, 돼지 마릿수: 약 1,300만 마리 ³⁾ (2016년 3월 기준)
	산업	771	
	혼합 ¹⁾	416	
합계	3,979	5,745	

주 1) 혼합은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을 같이 진료하는 곳임.

2) 농협경제연구소(2013)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3) 통계청(kosis.kr)-가축동향 조사.

자료: 전국 동물병원 현황(Journal of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Vol. 51_No.2).

- 현행 수의사법령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자가 진료를 제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자가 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함. 산업동물에 대한 수의사의 진료 인력 부족과 가축 방역을 위한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 의무 사항을 고려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산업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에 대한 허용은 불가피함.
 - 자가 진료의 범위를 제한하려면, 「수의사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9)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89호)

수의간호복지사 국가 자격제도 신설, 전문 교육과정 마련

표 3.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가 진료의 제한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 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자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 행위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 행위

자료: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가 자격제도 신설 및 전문 교육과정 마련

- 수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동물의 진료 행위는 자칫 동물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전문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수의간호복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의료분야의 간호사와 같이, 국가에서 자격과 면허를 관리해야 함.
- 공식적으로 인정된 수의 간호 관련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동물 진료 보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함.
 - 일반 의료 분야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전문학교와 간호학교 포함)을 졸업한 자”가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의료법」 제7조-2017. 2. 2. 시행).
- 동물 간호 관련 교육 과정과 국가시험은 수의간호복지사의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함.
 - 미국에서 동물을 간호하는 직업인 수의테크니션은 소변검사, 피검사, 진료 보조, 조직 및 혈액 샘플 준비, 수의사의 진단과 분석 보조, 의료장비 사용, 진료 결과 기록, 간호서비스, 신규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¹⁰⁾

10) 한상근 외(2013). 『주요국과의 직업비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2016년

-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현)
-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
(최병욱,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욱, 노호영)
-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욱, 장철수, 최지현)
-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현)
-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발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정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용)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윤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중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중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KREI 농정포커스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7. 12.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조미형,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ISBN: 978-89-6013-903-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